

## 예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(안) 예고

「예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예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19. 9. 26.

예천군의회 의장



### 1. 제정이유

-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,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(안 제3조)

-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예천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

#### 나.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·지원 (안 제4조)

-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인력지원센터로 지정
- 지원센터는 센터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음
- 지원센터는 농업 관련 구인·구직 등록, 취업알선·연계,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

다. 보조금 등의 지원 (안 제5조)

-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

라. 공유재산의 사용 (안 제7조)

- 「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

**3. 제정조례안**

- 붙임과 같음

**4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

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결과 :

마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평가 : 의견없음

**5. 의견제출**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9년 9월 30일**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주 소 : 예천군의회 (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)
- (☎054- 650- 6407, FAX 054- 650- 6409)
- 전자우편(이메일) : syyh2000@korea.kr

## 예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예천군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,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.
2. “농촌인력”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, 농업경영체, 생산자단체를 말한다.
3. “농촌인력지원센터”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(조직)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촌인력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
3.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
4.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
  5.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
  6.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
  7.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.
-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·지원)** ① 군수는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인력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 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센터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농업 관련 구인·구직 등록, 취업 알선 등의 직업소개
2.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
3.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
4.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5.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
6.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
7.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
8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보조금 등의 지원) 군수는 제4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수입)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.

1.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수입
2. 보조금
3. 기타 수입금

제7조(공유재산의 사용)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센터의 지정 취소)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2.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
3.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
4.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
5.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는 경우

제9조(지도·감독 등)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·감독하여야

하며,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지도·감독 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 관련 근거 】

### □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“이란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농업인“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농업경영체“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.
4. “생산자단체“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5. “농촌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  - 가. 읍·면의 지역
  - 나.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, 농업 관련 산업,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